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46

발의연월일: 2025. 6. 2.

발 의 자:차규근・신장식・김준형

강경숙 · 황운하 · 김재원

김선민 · 서왕진 · 정춘생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혐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각각 3년 및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변경하고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협동조합 운영의 상호성 증진을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회원 자격 확대(안 제2조, 제71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및 제115조의4제1항)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가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함.

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 변경 및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요청 권한 신설(안 제11조제7항 및 제8항)

협동조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결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3년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세청장,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매년 과세정보, 피보험자 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 제한(안 제46조 후단 신설) 협동조합의 상호성을 증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함. 법률 제 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으로, "제1호"를 "제71조"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연합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으로, "제3호"를 "제114조"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으로, "설립한"을 "제115조의2에 따라 설립된"으로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국세청장
-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4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 비율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제1항 전단 중 "협동조합이"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이"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로 한다.

제115조의2제1항 중 "조합이"를 "조합 등이"로 한다.

제115조의4제1항제1호 중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립된 조합"을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그 다음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협동조합연합회"란 <u>협동조</u>	2 <u>협동조</u>
<u>합의 공동이익</u> 을 도모하기 위	<u>합 등의 공동이익</u>
하여 <u>제1호</u> 에 따라 설립된 <u>협</u>	<u>제71조</u>
<u>동조합의 연합회</u> 를 말한다.	<u>연합회</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4
<u>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u> 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동이
도모하기 위하여 <u>제3호</u> 에 따	<u> 익제114조</u>
라 설립된 <u>사회적협동조합의</u>	<u>연합회</u>
<u>연합회</u> 를 말한다.	<u>.</u>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5
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u>협동조합이 공동이익</u> 을	협동조합 등의 공동이익
도모하기 위하여 <u>설립한</u> 연합	<u>제</u>
회를 말한다.	1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u>.</u>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5. 제7항----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생략)
- ③ ~ ⑥ (생 략)
-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8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J. <u>All 1 8</u>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7
<u>3년</u>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국세청장
 - 2.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동부장관</u>	
3. 그 밖에 실태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도	<u></u>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	; 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던	<u></u> 체의
<u>장,</u> 그 밖의 관계 기관 •	법인

<u> 경기단의 경, 시청사시단세의</u>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46조(사업의 이용)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 비율은 협동조
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다.
<u> </u>
小/11工(百日位立 6) ①
جا رح
<u>현동</u>
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u>이 장에서 같다)이</u>

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② ~ ⑤ (생 략)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u>사회적협동조합이</u>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 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 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 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 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 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 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 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

_	
_	·
_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영과 실름) 114조(설립인가 등) ①
^II -	114年(名音记/下号) ①
-	
-	<u>사회적협동조합(사</u>
	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
] -	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15조의2(설립인가) ①
-	
-	
_	
	등이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	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 로 한다.

- 1. 이 법에 따른 <u>협동조합과 사</u> 회적협동조합
-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u>설립된 조합</u>
- 3. (생략)
- ② (생 략)

1
<u>협동조합연합회등</u>
2
설립된 조합 및
연합회

-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